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 2014.11.22.
[법률 제12672호, 2014.5.21.,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의 위생 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며,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상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달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19조의2).

나. 영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제22조제3항제4호).

다.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과징금 미납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제28조의2 신설).

라.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그 외 허위표시·과대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 및 제45조).

〈법제처 제공〉

【제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정행정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강병규

◎ 법률 제126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 시설 또는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과징금처분)”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 축산법령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32조제1항 중 “영양가 및 품질과”를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대광고 또는”을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으로 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6의2. 제3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표장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제공〉



2014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14. 5. 27 현재 3개소)

연번	영업 종류	영업소 명칭	영업소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1	식품접객업	갯바위산골 순두부보쌈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63 (신천동)	오리고기	중국산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2014.01.21	표시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2	식품접객업	해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46-5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독일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독일산으로 혼동우려표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으로 혼동우려표시 중국산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우려표시	2014.04.09	표시삭제 및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임실사무소장
3	식품접객업	착한오리	강원도 원주시 개운로123 (개운동)	오리고기, 배추김치	중국산 훈제오리와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2014.05.13	표시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원주사무소장